

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
관리운영 위탁동의안

거 창 권

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2011 -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2.
제 안 자 : 거창군수

① 제안사유

-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해서는 기·예능의 전문성확보, 많은 회원들이 전수활동지원, 민속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등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함

② 관리운영 위탁내용

① 위탁시설

- 시설명 :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
-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-14
- 규모 : 부지12,382㎡, 건물951.59㎡, 논밭, 야외공연장
- 주요시설
 - 지하1층(141.6㎡) : 발전기실, 펌프실, 전기실 등
 - 지상1층(679.49㎡) : 사무실, 회의실, 전시실, 연습실, 창고 등
 - 체험동3동 130.5㎡, 공연장, 논밭608㎡, 주차장9면

② 운영분야

가)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

- 시설물관리 및 보수,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최상의 상태유지
-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설 및 장비, 비품 관리 및 운영
- 지속운영 가능한 연간 시설물 운영계획수립
-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

나) 관리위탁 비용 및 사용료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이 관리위탁 비용
-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습실 등의 사용료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직접 징수하고 정산 후 수입금에 대하여는 익년 관리운영비 교부 시 차감

③ 위탁기관

- 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

④ 위탁조건

가)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
나) 위탁조건

- 관리책임 및 시설유지, 승인 없는 시설물 변경금지
- 사고예방의무, 귀책사유 민형사상책임, 법률 및 조례 준수
- 관리위탁시설물에 대한 도난·화재예방 책임연간 시설물 운영방안
- 계약해지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반환

③ 위탁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 내지22호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0조 내지 제15조
- 거창군사무의 민각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,제2항